

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1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조례를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맞게 정비하고, 현재 추진중인 집행 및 공개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변경

- 개정 전 : 「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」
- 개정 후 : 「안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」

나.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 (안 제2조)

다.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의 시의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공개 방식에서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 (안 제3조)

라.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 항목을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고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 기준 마련 (안 제4조)

마.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준용하여 집행 기준을 따르도록 정비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전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나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2】

다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3】

마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5. 9. 10. ~ 2025. 9. 30. (20일간)

바. 기타 참고사항

1) 현행조례 : **【붙임 4】**

2) 방침결정문 : **【붙임 5】**

【붙임 1】

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집행 및 공개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.

제3조(공개방법)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4조(공개내용) ① 공개 내용은 사용자, 일시, 장소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, 비목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내용에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

개할 수 있다.

제5조(집행기준) 업무추진비는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라 사용·집행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행정안전교육국
입 안 자	회계과장	김 태 희
	재무팀장	한 수 진 (031-481-2171)